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9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출자·출연의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 홍영준)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설립일 : 2003. 12. 31.
- 설립형태 : 재단법인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시설규모 : 건축면적 967.12m², 건물연면적 10,830.25m²

	10층	대표이사실, 정책연구실, 경영기획실, 회의실, 북카페
	9층	지역복지통합본부, 서울복지교육센터, 감사실, 노조사무실, 직원휴게실
	8층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통전략관
	5층	회의실, 교육장

○ 관련법령

- 법령 :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20년 총 소요예산(안) : 41,526,107천원

4) '20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25,171,646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6,354,461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음.
-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¹⁾되어 있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산의 복지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정비취지에 공감하나, 출연기관의 설립시 타당성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토록 하는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지방재정법제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설립 목적 관련

-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2-1>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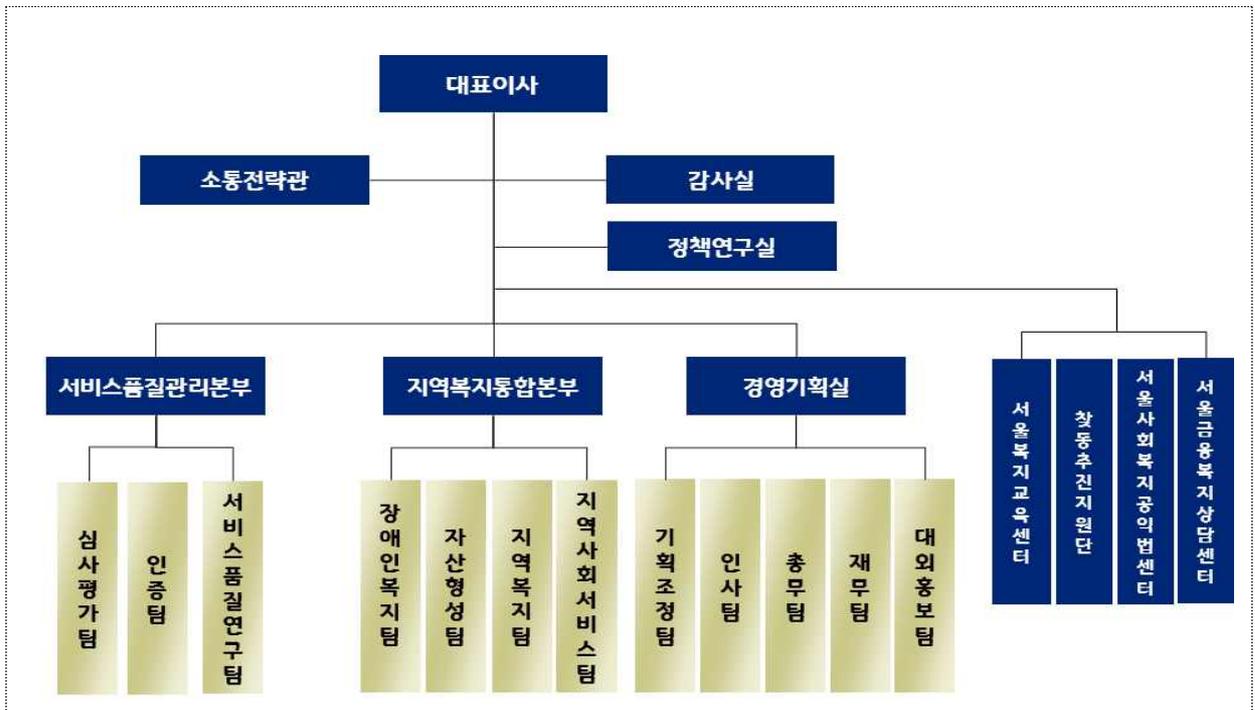
-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시설 인증에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까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서울시 복지재단은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2-2>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19. 7. 31.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의 현재 인력 정원은 170명이며, 현원 170명임.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등급 및 미화직군, 별도정원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직 13명은 미포함 되었음.

<표2-3> 서울시복지재단 정·현원표

(’19.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별도정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70	1	169	1	10	22	26	25	56	27	2	-
현원	170	1	169	1	10	24	21	21	40	49	2	1

○ 부서별 주요 사업<표2-3>

부서명	주요업무 내용
정책연구실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심사평가팀	서비스품질향상 위한 제도적 지원
인증팀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서비스품질연구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연구
서울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 인재양성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자산형성팀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
지역복지팀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서비스팀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찾동추진지원단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서울공익법센터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기획조정팀	조직경영의 전략적 실행력 강화
인사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총무팀	효율적이고 신뢰하는 조직인프라 구축
대외홍보팀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감사실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실현

다. 예산 관련

- 집행부는 복지분야에서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다음 표와 같이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표2-4> 서울시복지재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합 계	38,048	33,750	33,625	35,190	35,502
출 연 금	32,359	26,072	21,483	22,004	20,806
사 업 수 입	510	423	472	1,484	1,644
사 업 외 수 입	2,197	2,000	4,730	4,171	6,204
잉 여 금	2,982	5,255	6,941	7,532	6,847

<표2-5> 향후 5년간 출연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415,242	45,551	47,363	49,260	51,244	53,322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의 서울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복지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등으로 재정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복지재단의 출연근거²⁾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³⁾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예산안 심의시 신규 추진 사업 및 조직 개편시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여부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69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 건물연면적 10,830.25㎡
 - 위치도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다. '20년 총 소요예산(안) : 41,526,107천원

라. '20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25,171,646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6,354,461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권자은 (☎ 2133-7321)